

I. 시작하며

독일은 광범위한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다. 언론자유는 기본법(Grundgesetz) §5의 (1)¹⁾을 통해 의사표현 및 전달의 자유와 언론(신문/방송)보도자유, 검열로부터의 자유 등의 개념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기본법에 포함된 언론자유조항은 1949년 처음 제정 때부터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다. 대신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법에 따라 그 의미가 해석 및 확대되고 있다. 언론자유는 제5조의 (2)²⁾에 의거하여 일반 법률조항이나 청소년보호법규, 개인 명예권 등의 요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제한될 수 있는데, 슈피겔 재판(Der Spiegel Urteil)으로 불리는 1966년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언론자유와 명예를 고려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존재한다. 바로 사건사고 보도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공개수준이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언론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의 정보공개는 최근 몇 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하지만, 그 계기는 달랐다. 국내의 경우, 위계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운동(#MeToo), 어린이 성착취물 관련 범죄, 몰래카메라 및 비동의 영상유포 등과 같은 성범죄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반면, 독일은 이주자들에 의해 발생한 사건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정보공개로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기류가 생성되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피의자에 관한 정보를 내보내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한 사례들이

* 라이프치히대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friendman@hanmail.net

1) 기본법 제5조 (1):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과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신문(발행)의 자유와 방송과 영상을 이용한 보도는 보장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기본법 제5조 (2): 이(제5조 (1)) 권리는 일반법률조항, 청소년보호법규 및 개인명예권에 의해 제한된다.

독일언론위원회(Deutscher Presserat)에 다수 접수되면서, 언론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자정요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독일에선 언론협회나 보도윤리 측면에서 성범죄 보도에 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관련 체계 내에서 이미 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인격권에 대한 정의와 판례, 독일언론위원회의 저널리즘윤리규칙(Ethische Standards für den Journalismus)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격권의 개념과 해석이 독일 민법과 형법, 판례법 등에 기초하여 정보공개 수준을 정한다면, 저널리즘윤리규칙은 자율규제기관이 스스로 언론보도 자정을 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언론의 과도한 개인정보공개, 인격권 훼손 등을 해결하고자 적용되기에 목적은 유사하다. 인격권 개념이 적용되었을 때, 형법과 민법 등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형법과 민법 역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로 작동하고 있으며, 저널리즘윤리규칙의 차원에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격과 명예 보호, 차별, 선정적 보도, 무죄추정 등의 조항이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고는 독일 언론의 성범죄 보도와 관련한 분쟁 해결 사례를 일반적 인격권과 저널리즘윤리규칙 두 개의 큰 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 인격권의 개념과 유형, 독일언론위원회의 저널리즘윤리규칙 중 대표항목 등을 소개할 것이다. 둘째, 언론 보도,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보도 중 일반적 인격권과 관련한 판례들을 찾아 그 내용을 소개한다. 저널리즘윤리규칙의 사례는 독일언론위원회의 불만처리에 접수된 사례들 중 성범죄 피해자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토록 한다.

II. 인격권과 저널리즘윤리규칙

1. 인격권의 개념과 유형

독일에서 언론과 관련된 법은 하나의 법이 아닌, 여러 개의 법들의 관련 조항이 유기적으로 엮인 횡(적)법(Querschnittsmaterie)으로서 미디어법(Medienrecht)으로 불린다. 미디어법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기에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범주가 조금씩 다르지

만, 커뮤니케이션이 미디어를 통해 매개될 때 발생하는 또는 발생 가능한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기본법에 의해서 언론자유와 정보접근자유가 보장된다면, 콘텐츠 내용은 민법과 형법을 통해 다뤄진다. 통신을 이용한 콘텐츠전달방식에 대한 영역은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에, 공영/상업방송과 온라인사업자의 운영규정은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관한 주간협약(Rundfunkstaatsvertrag)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공영방송운영은 독일연방소속 16개 주 정부의 협의로 체결된 ‘주간협약’의 형태로 운영되는 반면, 상업방송운영은 각 주의 미디어청(Medienanstalt)의 관할로서 주법(州法)에 따라 규제된다(Frank Fechner, 2019). 콘텐츠 측면에서 아동/청소년미디어보호는 청소년 미디어 보호를 위한 주간협약(jugendmedienschutzgesetz)의 관할이며, 네트워크시행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으로는 불법/혐오콘텐츠 확산을 방지한다. 신문과 잡지 등의 인쇄매체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가 제정한 언론법(Pressegesetz)으로 운영되지만, 그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갖지 않는다. 이 외에도 저작권과 상표권 등도 콘텐츠 유통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미디어와 관련한 여러 법 중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은 인격권(Persönlichkeitsrecht)이다. 독일의 인격권 개념은 기본법 제1조3)의 인간 존엄성 원칙에서 파생된 기본법 제2조 (1)4)에 기초한다. 기본법 제2조의 주요 내용은 권리 침해로부터의 자유, 헌법질서/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개인의 인격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독일법상의 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s Persönlichkeitsrecht)과 개별적 인격권(besonderes Persönlichkeitsrecht)으로 구분한다. 역사적으로 일반적 인격권은 극단적 민족주의 및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 사회가 국가나 권력으로부터 불가침한 인격의 중요성을 인식한 데서 출발했다. 일반적 인격권은 기본법상에서 인격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것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개념으로, 1954년 연방(서독)사법재판소의 판결(BGH, 25.5.1954)5)과 1958년의 판결(BGH, 14.02.1958)6) 등을 판례를 시작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일반적 인격권은 명예나 사생활에 관한 부분

3) 기본법 제1조 (1):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국가는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4) 기본법 제2조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질서나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5) https://www.rechtsanwaltmoebius.de/urteil/bgh_urteil_I-ZR-211-53_veroeffentlichungsbrief-nachricht.html

6) <https://openjur.de/u/190815.html>

을 주로 다루며, 성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민법 제823조의 (1)7)의 ‘기타 권리’에 해당한다. 이와 다르게, 개별적 인격권은 민법으로 보장되는 성명권, 미술/사진에 관한 저작권에 해당하는 초상권, 데이터보호법에 따른 저작권 및 개인정보 등과 같이 성문법으로 보호되는 가치다(bpb, 2015).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 중 언론보도 분쟁에서 판단기준으로 다뤄지는 개념은 전자에 해당된다. 일반적 인격권은 기본법 제5조의 (1)에 따라 언론 자유와 표현 자유를 획득한 경우에도 기본법 제5조의 (2)의 개인 명예권에 의한 제한, 기본법 제1조의 (1)과 제2조의 (2)에서 명시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권리보장 등을 근거로 보장된다고 해석된다. 여기서 일반적 인격권은 개인적, 직업적 명예보호(Ehrschutz)를 위한 장치로, 이 개념을 통해 개인은 비방과 모욕 등으로부터 발생할 여지가 있는 피해를 예방한다. 여기서 명예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법에 따라 적용된 것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하기에, 명예 보호는 포괄적인 의미로 그 범위가 해석되어 명예의 유형에 따라 보호가능성을 판단하게 된다. 법리적으로 명예는 자존심 등의 주관적 명예와 사회활동으로 형성된 객관적 명예 등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중 법을 통해 보호되는 것은 후자에 해당되며, 이는 형법 제185조와 민법 제823조 등의 조항을 통해 훼손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bpb, 2017a).

한편, 일반적 인격권은 사생활 영역(Intimspähre), 개인 영역(Privatsphäre), 사회/공공 영역(Sozial- und Öffentlichkeitssphäre) 등으로 활동영역에 따라 그 유형이 나뉜다. 사생활 영역은 일반적 인격권 중에서도 가장 강도 높게 보호되는 영역으로서 개인의 생각과 감정 상태, 건강 상태 및 성생활 등 생활 속 내밀한 공간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영역은 사업 영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거의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진다. 둘째, 개인 영역은 가정 및 가족 영역, 거주지(실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길 바라는 은행계정정보, 휴가지/거주지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한다. 개인 영역과 관련한 정보 공개는 사생활 영역과 달리, 특정 기준을 충족할 때 허가된다. 개인 영역에 관한 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기본권리 및 이익이 대중의 관심이나 사회적 이슈

7) 민법 제823조 (1): 타인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재산 또는 기타 권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인 영역 정보공개는 불가능하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엔 허가된다. 그렇기에 개인 영역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유명인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이슈이며, 상황에 따라 정보공개 수준과 허용치가 상이하게 결정된다. 셋째, 사회/공공영역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득 가능한 정보가 발생하는 공간으로서 사회 활동, 영화관 방문, 호텔숙박, 전문 직업활동 등이 해당된다. 사회/공공영역에는 최소한의 정보보호기준이 적용된다(bpb, 2017b).

범죄 보도에서 일반적 인격권 보호는 피해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피의자나 범주자에 제도 적용된다. 다만, 피해자의 정보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로 분류되는 반면, 피의자의 정보는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와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엔 공개 가능한 정보범주가 확대된다. 이는 정보공개 기준을 판단할 때, 공개된 정보가 범주자의 정보가치는 대중의 관심보다 가치가 더 낮다고 평가하는 결과다. 반대로, 피해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정보공개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보다 낮다고 보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있어 제한을 두게 된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일반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저널리즘윤리규칙 내에서의 범죄보도

1956년 설립된 독일언론위원회는 연방 차원에서 언론법을 도입하고자 했던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5개의 신문발행인과 5명의 언론인이 영국언론위원회(British Press Council)를 모델로 삼아 설립한 자율규제기구다. 독일온라인잡지/신문발행인협회(Bundesverband Digitalpublisher und Zeitungsverleger), 독일언론인협회(Deutscher Journalisten-Verband), 독일노동자협회(ver.di) 내의 독일언론인연합(Deutsche Journalistinnen- und Journalisten-Union), 독일잡지발행인협회(Verband Deutscher Zeitschriftenverleger) 등 네 개의 언론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이 단체들에서 각각 두 명씩 인력을 제공하여 협회의 재무와 인사, 조직을 운영한다. 독일언론위원회의 운영기금은 회원 단체의 기부금과 연방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지만, 자율규제기관만큼 운영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일언론위원회는 연방 정부에서 인증받은 언론인 신분증(Pressausweis)을 발급하고, 회원사들이 인쇄매체와 온라인매체를 통해 제공한 저널리즘 형식 기사 중 불만이 접수

된 심의절차를 진행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인 불만처리의 기준은 독일언론위원회가 1973년 언론규약으로 명명된 저널리즘윤리규칙이다. 이 규칙은 1976년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직무상 비밀(⑤), 1978년 성차별을 금지하는 차별(⑫), 1996년 개인인격권보호 조항의 통합(⑧), 2006년의 광고와 편집의 분리(⑦)와 신중 조항의 수정(②), 2001년 서문에서 정보제공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내용 추가, 2013년 피해자보호 조치가 포함된 개인 인격권 보호 조항의 수정(⑧), 2014년 신중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관한 규정 개정(②), 2017년 피의자/범죄자 소속(출신) 표시 제한 추가(⑫-1) 등의 조치를 통해 현재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2020년 현재 독일언론위원회의 저널리즘윤리규칙은 ① 진실성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② 신중, ③ 정정, ④ 조사 제한, ⑤ 직무상 비밀, ⑥ 업무 분리, ⑦ 광고와 편집의 분리, ⑧ 개인인격권 보호, ⑨ 명예보호, ⑩ 종교/세계관/관습의 존중, ⑪ 선정보도 및 청소년보호, ⑫ 차별, ⑬ 무죄추정, ⑭ 의약품 보도, ⑮ 특혜, ⑯ 불만처리결과 공포 등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성범죄 피해자보도와 관련한 내용은 주로 ① 진실성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⑧ 인격권 보호, ⑨ 명예보호, ⑪ 선정보도 및 청소년보호, ⑫ 차별, ⑬ 무죄추정 등 여섯 가지 항목이나, 그 외의 항목들도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각 항목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실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첫째, 언론의 최우선과제로 꼽히는 ‘진실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언론인들이 명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으로 정의된다. 이 조항의 첫 번째 하부 항목인 독점보도는 의견형성에 필수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과정이나 발생한 사안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정보 제공자와 독점계약 또는 다른 언론사의 접근 차단 등의 조치로 인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독점보도로 인해 정보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 조항의 주요 골자이다. 두 번째 하부 항목은 선거보도 과정에서 다수의 언론이 공유하지 않는 정보들에 대해서 보도할 것을 장려하는 선거보도 조항이며, 마지막 세 번째 하부 항목은 편집되지 않은 보도자료를 보도할 경우, 원본으로 제공된 그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2) 인격권 보호

인격권 보호 조항에 따르면, 언론보도는 개인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을 명시한다. 하지만 언론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öffentlichem Interesse)'에 의한 목적이라면 허용되는데, 이 때 공개된 정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개인정보 공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이해보다 큰 지를 가늠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정적인 목적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정당화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효과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저널리즘윤리규칙에서 인격권 보호는 총 11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제시된다.

저널리즘윤리규칙의 인격권 보호 조항 중 범죄보도(Kriminalberichterstattung)에 따르면, 대중이 형사범죄, 수사, 사법절차 등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한 보도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사의 몫이라고 전제한다. 보도 과정에서 실명 공개나 사진, 피의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공개로 얻는 이익이 개인정보공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이해보다 높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혐의, 주제, 절차, 피의자/범죄자의 지명도, 피의자/범죄자의 이력(전과) 등이 있다. 공공의 이익은 매우 심각하거나 특수 유형의 형사범죄, 기소된 범죄가 피의자/범죄자가 사회적으로 수행한 직무/임무/역할과 관련 있거나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 저명인사의 지위가 혐의를 받는 범죄행위와 관련 있거나 혐의를 받는 범죄가 대중에게 알려진 이미지와 모순되는 경우,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수사당국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피의자/범죄자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 인격권 보호 조항엔 피해자 보호(Opferschutz)에 관한 내용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사고, 피해, 범죄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신원보호는 특별히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 본인이나 친척,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동의하거나 공인인 경우,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의 공개가 가능하다.

그 외 저널리즘윤리규칙의 인격권 보호 조항에 따라,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와 뉴스의 실제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가족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또는 정보

공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실종자의 경우, 이를 관할하는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개인정보공개가 가능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한 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도에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살 보도는 언론사 자체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개인거주지 및 병원/요양원/재활시설 등의 이용여부 등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며, 비유명인들의 기념일에 대한 정보는 관련자들의 동의가 수반되어야만 언론에서 공개가능하다. 정부활동 반대인사의 개인정보는 그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데 있어 조심성을 고려해야 하며, 난민의 탈출경로도 차후 다른 사람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공개 결정에 있어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 언론사 측이 관련 기관에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저널리즘윤리규칙에 따라 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정보제공자에 대한 정보, 통신기록 등에 대해선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

(3) 명예 보호

셋째는 명예 보호다. 저널리즘윤리규칙에 따르면, 말이나 그림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제공하여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언론윤리에 위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 보호는 피의자나 피해자를 희화화하거나 특정한 기준을 제공하여 편견을 갖게 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기본 장치로 해석된다.

(4) 선정정보도 및 청소년보호

선정보도 및 청소년보호 조항에는 부적절보도, 폭력보도, 재난과 참사보도, 당국과의 보도조정/엠바고, 범죄자 회고록, 마약 등 여섯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적절보도는 사람을 하나의 대상이나 단순한 도구로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윤리규정으로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나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익 목적을 넘어 보도하는 방식도 이에 해당한다. 신문의 제1면에 폭력행위나 사고 내용이 담긴 사진을 게재할 때, 언론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폭력보도는 언론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피해자/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받는 이익을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언론보도는

범죄과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진정성 있는 관점으로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범죄자들이 언론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에 범죄 가해자에 대한 언론 인터뷰는 금지된다. 또한, 언론은 범죄자와 경찰과의 증재 역할로 참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정보도와 청소년 보호의 세 번째 항목인 재난과 참사보도는 피해자의 고통과 구성원의 감정을 고려할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이는 재난 및 참사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언론보도로 인한 또 다른 희생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언론은 일반적으로 뉴스보도 금지를 허용하진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 당국과의 보도조정과 엠바고는 가능하다. 해당 항목에 따르면, 보도조정/엠바고는 피해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구제하는 경우에만 허가되며, 법집행기관의 요청이 설득력이 있을 경우, 엠바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제공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범죄자의 회고록을 발행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를 가하기 때문에 저널리즘윤리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마약 관련 보도에서도 이를 미화하거나 경시하는 풍조를 막기 위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5) 차별

피의자 또는 피해자보도와 관련된 저널리즘윤리규칙의 다섯째는 성별/장애/민족/종교/사회배경/출신국가 등의 요인들로 인해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차별의 ⑫-(1)은 형사범죄에 대해 보도할 때, 피의자/가해자의 민족/종교/기타 소수 민족을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항목으로 2017년 3월 22일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다. 조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공익이 배경되지 않는 한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소속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보도윤리규칙 ⑫-(1)이 신설되면서 독일언론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실행원칙(Praxis-Leitsätze Richtlinie 12.1 des Pressekodex)을 함께 제공하였다(Deutscher Presserat, 2017). 신규규칙 적용방식에 대해 소개되어 있는 이 자료에 따르면, 편집담당자는 피의자/범죄자의 소속 정보공개가 정당한 공익에 근거한 것인지와 일반화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보도윤리규칙 ⑫-(1) 적용을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호기심에 따라 피의자/범죄자의 소속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윤리측면에서 적합한 표준이

아니며, 수사당국에서 언급한 소속을 그대로 전달하더라도 언론의 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피의자/범죄자가 속한 소속을 언급하는 데 있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가정이어야만 하며,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은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도 주지시키고 있다.

공익 목적에 따라 피의자/범죄자의 소속 정보가 허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독립위원회는 일곱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테러 문제(예: 2017년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축구팀 버스 폭파사건), 공통된 소속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 사건(예: 2015/16년 쾰른 시 난민신청자들의 성추행/성폭행사건), 피의자/범죄자의 전과, 피의자/범죄자가 소속된 집단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경우, 피의자/범죄자가 소속된 집단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예비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소속 집단 특성에 따라 특별대우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 중에 피의자가 소속된 단체가 소송과 관련한 절차를 담당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와 반대로, 경멸적인 용어 또는 차별적인 고정관념으로 피의자가 소속된 단체를 비방하는 경우나 소속에 대한 정보가 불필요/부적절하게 강조되는 경우, 특정 그룹 구성원을 단순히 문제대상으로 여기는 경우 등은 금지하도록 하였다.

보도윤리규칙 ⑫-(1)의 신설은 언론사와 독일언론위원회 간의 갈등을 빚기도 했다. 독일언론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준비하고 있던 2016년, 작센(Sachsen)주 드레스덴(Dresden)에서 발행되는 <작센신문(Sächsische Zeitung)>은 고의적으로 보도윤리규칙 ⑫-(1)을 위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작센신문>이 반대 입장을 펼치게 된 데에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다. 독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적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많은 응답자가 피의자/범죄자를 외국인, 특히 망명 신청자라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센신문> 측은 독일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독일인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 국적을 명시함으로써 외국인 범죄를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도윤리규칙 ⑫-(1)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FAZ, 2017.03.22; MEEDIA, 2016.07.05; M, 2016.07.06.).

(6) 무죄추정

저널리즘윤리규칙에서 피의자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항 여섯 번째는 무죄추

정에 관한 규정이다. 무죄추정은 조사 과정이나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편견을 갖도록 하는 용어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조치로, 편견·후속 보도·청소년 범죄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견에 관한 저널리즘윤리규칙에서 수사 및 법 절차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대중에게 범죄, 법 위반, 기소 및 사법 판단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며, 편견을 갖도록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피의자가 자백한 경우, 피의자의 주장과 반대인 증거를 확보하였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를 가해자라고 명명할 순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피의자의 무죄를 추정하도록 한다. 헌법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해 피의자가 추가적으로 사회적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기에, 보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 피의자보도 중 편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후속보도는 피의자의 조사과정에 대한 보도를 행한 경우, 그 사건의 최종판결 결과에 대해 보도해야 하며,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죄로 판결난 피의자의 사회적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청소년범죄는 그들의 미래를 고려하기 위해 언론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수사, 형사소송 및 법정출두 등을 언급할 때 특별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저널리즘윤리규칙 중 상기한 여섯 가지 항목들은 언론보도로 인해 사건관련자들에게 발생할 여지가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기본법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는 독일 언론의 출판/보도권이지만, 자율규제를 통해 피해의 가중이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혐의로 인해 받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정 활동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정한 사례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피의자와 범죄자의 구별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가 존재하는바, 이 역시 성범죄 보도에도 적용되고 있다.

III. 성범죄 보도 관련 판례 및 평결사례

1. 성범죄 보도 관련 판례

본고는 판례를 조사하기 위해 언론정책/법 관련 전문웹서비스인 Telemedicus와 판례제공 웹서비스인 Kostenlose Urteile, 연방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의 서비스⁸⁾를 이용했다. 자료조사는 미디어법, 성폭행, 보도 판례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검색결과로 제시된 판례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였다. 그러나 독일에서 언론 보도 중 성범죄 피해자 등의 문제가 법원에서 다루진 사례가 많지 않아 사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제약이 존재했다. 그나마 발견되는 판례들은 성범죄 피의자들을 다룬 기사들이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수집한 자료 중 본 연구보고서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사례 1: 아동 성학대 혐의자의 실명 언급

판결: 연방헌법재판소, 1998(사건번호: BvR 131/96)

1977년, 도박중독치료를 받던 한 여성은 자신의 담당의사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친부에게 아동성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다. 이 여성은 1986년에도 자신의 도박 중독을 치료한 여러 의사들에게 동일한 학대사실을 알리며 자신이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된 이유가 친부의 성학대 및 그의 양육방식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1987년과 1989년, 그녀는 친부에게 자신을 성학대한 내용을 비난하는 서신을 여러 차례 보냈으며 1989년에는 자신의 조카(친언니의 딸)의 양육을 도와주는 친부가 조카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복지국에 친부가 자신을 학대한 사실을 알리게 된다.

1990년 이 여성은 그녀의 친부에게 다시 서신을 보내 그를 용서하겠다고 했지만, 1991년 1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이 친부에게 학대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후, 그녀는 자신의 직장보험/연금의 혜택이 친부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992년 아동복지국에 다시 친부의 학대사실을 근거로 조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시금 요청하였으며, 텔레비전 토크쇼

8) <https://www.telemedicus.info/>, <https://www.kostenlose-urteile.de/>,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

〈Schreinemakers live〉(Sat.1)와 잡지 〈Emma〉를 통해 어린 시절 성학대로 인해 심리적 피해를 입게 된 자신의 상황을 알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성의 친부는 1992년에 접수된 아동복지국의 신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그녀를 성학대했다는 주장이 제3자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하였지만 그녀는 이를 거부하게 된다. 그 이후 친부는 지역 법원에 자신은 그녀를 성학대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그녀의 도박 빚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지불거부절차를 밟게 된다.

지방법원은 먼저 그녀의 친부가 그녀를 성학대했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하였다.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선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만약 성학대를 당했다는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그녀 친부의 주장대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이다. 법원의 조사 결과, 그녀의 주장대로 그녀는 8세부터 성추행을 당하기 시작하여 12세가 될 즈음부터는 정기적인 성폭행으로 그녀를 성학대했다고 가정하였다. 이렇게 가정하게 된 원인은 그녀의 친부가 진술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지방법원에서는 그녀가 제3자에게 자신의 성학대 경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녀의 친부는 이 결정에 대해 지방고등법원에 항소하게 된다.

지방고등법원은 형법의 명예훼손 관련 조항에서는 사실적 주장이 아닐 경우에만 해당 주장을 금지시킬 수 있는데, 지방법원의 조사 결과 그녀의 주장이 사실로 판명되었다는 점을 들어 그녀의 발언을 금지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조사과정에서 그녀가 제공한 정보가 충분히 믿을 만했고, 지방고등법원 심리 때 얻은 심리학 전문가의 의견에서도 그녀의 피해사실이 확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고등법원은 여성이 친부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들어 친부가 그녀를 성학대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행할 때에는 그녀의 이름과 친부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하게 된다. 그녀의 이름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데에는 그녀가 결혼 후에도 그녀의 성(姓)을 바꾸지 않고 친부의 성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지방고등법원 측은 그녀가 이름을 밝힐 때, 성을 함께 표시하기에 그의 친부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 것이다. 지방고등법원은 그녀의 친부가 그녀를 성학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자신의 성을 공개함으로써 친부가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것을 용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Schreinemakers live〉에 그녀가 출연했을 때, 그녀 친부의 지인이 그를 알아본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지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그녀는 자신이 기본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녀는 그 동안 자신의 이름을 밝혔던 행위가 친부를 특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Schreinemakers live>에 그녀가 출연하면서 그녀의 친부를 알아본 경우가 있었지만, 그녀의 성은 ‘일반 이름’(널리 사용되는 성)이기 때문에 그가 특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도 함께 제기하였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성학대 피해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대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행하면서 사회 이면에 가려진 아동 성학대 문제를 표면으로 드러낸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이름으로 토론에 참여할 권리까지 포함되는데, 실명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권리가 박탈되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학대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텔레비전 출연과 도서 출간을 계획하고 있던 그녀는 지방고등법원의 판결대로 가명을 사용하게 되면 시청자/독자의 반응을 받지 못하며, 유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시청자와 독자는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 상황을 타자화하기에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된다는 점을 들었다.

니더작센 주의 법무부는 이 사건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 법무부는 그녀가 행하는 활동이 아동 성학대라는 사회 현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한, 의견 보호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반대로 지방고등법원의 판결 근거처럼 그녀와 그녀의 성과 이름, 그녀 친부의 성은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정보를 가진 사람은 그를 특정할 수 있어 개별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녀의 친부는 자신이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 동안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텔레비전 등의 언론에 출연함으로써 자신이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니더작센 주 법무부는 항소에 앞서 헌법 해석을 요청하게 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방고등법원의 판결이 기본법 제1조 제1항(인간 존엄성 불가침)에 근거한 제5조 제1항의 첫 문장(의사 표현 자유)과 두 번째 문장(일반 정보접근보장 권리)을 위배한다고 보았다.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주장을 진술하는 데 있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름을 밝히는 것은 독립적인 발화가 아닌, 내용 그 자체를 나타내는 요소로 정의하였다. 진술을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는 경우,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설명에 대해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

이며, 사실 주장에선 그 사람에게 진실을 보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 근거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이름 언급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법 제 1조 제1항에 근거한 제2조 제1항(인격 실현 권리)에 따른 일반 인격권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사람의 이름은 질서 유지와 개개인을 구별하는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개성의 표현이기에 개인은 법체계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존중 및 보호받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둘째, 연방헌법재판소는 판례에 따라 헌법과 민법에 의해 일반적 인격권이 보호되는 것은 맞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진술이 사실에 근거한 경우, 개인의 이익은 표현의 자유보다 앞설 수 없다고 판결한다. 이 사건은 언론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언급하기 때문에, 사건을 밝히는 것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인격권 보호는 기본권 보유자와 그의 생활환경 사이의 기본 조건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고 해서 친부의 일반적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결론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의 요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도서출판에서 가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이름 표현의 제약으로 인해 일반적 인격권이 훼손되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이름 사용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하게 된다.

사례 2: 성범죄보도에서 개인정보 사용 가능여부

판결: 연방헌법재판소, 2009(사건번호: BvR 1107/09)

1993년까지 프로축구 생활을 했던 원고는 2008년 10월 29일, 쾰른지방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 인터넷 포털에서 2008년 10월 16일 원고의 자백을 바탕으로 형사소송 및 사건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분데스리가 과거 스타가 성매매여성을 성폭행했다 - 어제 관련 재판을 받았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원고의 이름과 나이, 축구 경력 등과 함께 범죄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며, 최근 5년 동안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의 단골손님이었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29일, 추가 기사에서 온라인 포털 측은 사진 기록과 실명을 포함하여 형사소송에 대한 정보를

다시 게재하게 된다. 이에 원고 측은 인터넷 포털의 보도를 금지할 목적으로 임시금지 명령을 요청했고, 뮌헨지방법원은 2008년 11월 17일 이 금지명령을 받아들여 이름과 나이, 프로축구 선수로서 이전 활동을 담은 형사소송보도를 금지시키게 된다. 2009년 4월 7일, 지방고등법원은 피고가 된 인터넷 포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정보사용에 대해 선 허락하게 되지만, 범죄에 대한 단편보도 및 형사소송과 혐의를 언급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지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고는 항소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사진이 공개되면서 대중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의 개인권리에 상당한 훼손이 야기되었다고 봤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범죄행위 보도는 언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원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했다고 해석했다. 원고의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손실이 대중의 관심 충족으로 형성된 이익보다 적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원고가 자신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했다고 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원고 패소를 결정하였다. 개인의 성적 영역을 표현하고 유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핵심영역이지만, 개인의 성적 영역으로 인해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적 폭력이기 때문에 성범죄 행위 상황은 개인이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며, 유죄를 받은 성범죄자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제외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법문 해석 결과다.

사례 3: 성범죄자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한 묘사

판결: 함부르크 지방법원, 2009(사건번호: Az. 324 O 733/09)

2008년 5월 68세의 한 독일인 남성(원고)이 태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타블로이드 신문사인 <B.Z.>(온라인/인쇄발행, 피고)는 “세계와 우리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독일 교수 섹스돼지씨” 제하의 기사와 함께 이 남성과 태국남성 2명이 나체로 찍힌 사진을 1면 절반에 해당하는 큰 사진으로 보도했고, 사진 캡션엔 “섹스 몬스터의 얼굴”이라고 설명하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실제 사건은 2008년 5월 13일 태국관광경찰이 원고가 아이들과 유사 성행위 및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임시 체포하면서 시작된다. 함께 발견된 태국인들은 13세와 15세 소년들이었는데, 그들은 성행위에 대한 대가로 약 500바트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원고 측은 태국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나이를 21세와 23세로 소개했다고 말했으나, 결국 그는 미성년자(15세 이하) 성학대와 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2008년 10월 31일 기소가 중단된다. 조사과정 중 태국검찰은 원고의 집을 수색하여 많은 양의 어린이 성착취 동영상이 담긴 것으로 예상되는 CD와 DVD를 압수했지만, 14세 미만이라는 증거가 부재하므로 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2008년 12월 8일 중단되었다. 원고의 체포는 당시 태국과 독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원고는 <B.Z.>의 보도에 대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친척모임이나 동창회에 초대받지 못하고, 아파트 세입자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사회적 고립상태라는 점을 들어 8만 유로의 금전적 보상과 이자 지불을 요청했다. 원고의 재판 근거는 형법 제182조의 명예훼손에 대한 항목이었다.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원고는 민법 제823조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고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먼저, 원고를 알몸으로 보여준 사진은 일반적 인격권의 특별한 침해로 원고의 자기 사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특히, 문제가 된 사진은 원고가 옷을 완전히 벗고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대형포맷으로 그리고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13세, 15세 어린이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 1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했다는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13세, 15세의 어린이라는 증거는 수사기간 동안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기사에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명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았다. 즉, 기사에 “섹스돼지씨”로 원고를 설명하고 “섹스 몬스터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들에 대하여 원고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격하시키는 표현이며 그 외의 사실이 아닌 주장들의 나열은 일반적 인격권과 개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이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또한, 피고인 언론사가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도 원고 승소의 근거가 되었다. 최종판결은 <B.Z.>측이 원고에서 4만 유로의 위자료와 5%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 성범죄 보도 관련 평결 사례

독일언론위원회는 저널리즘윤리규칙을 근거로 접수된 독자불만들을 처리하는 불만처리위원회(Beschwerdeausschuss)를 통해 접수된 기사에 관한 평의를 실시한다. 언론 편

집인과 기자, 법조인 등 12명으로 구성된 불만처리위원회는 총 3개가 조직되어 있으며, 하나의 위원회는 1년에 4회씩 평의에 참여하고 있다. 평의 결과는 독일언론위원회의 아카이브를 통해 1985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가 제공된다.⁹⁾ 불만처리는 저널리즘윤리규칙에 따라 위반 정도를 판단하여 주의(Hinweis), 견책(Mißbilligung), 징계(Rüge) 등 세 가지의 판단이 내려진다. 견책과 징계를 받은 기사와 언론사는 저널리즘윤리규칙 제16조에 따라 적절한 형식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징계에 해당하는 사례 중 피해자보호 등의 요인이 포함되었을 경우엔 이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독일언론위원회의 불만처리 평의결과 중 성범죄 관련 사례는 앞서 언급한 아카이브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에 본고에선 최근 6년에 해당하는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성범죄와 관련한 키워드를 투입하여 사례를 추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소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추출했다. 사례는 ‘성범죄 피해자 관련 보도’와 ‘성범죄 피의자 관련 보도’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성범죄 피의자 관련 보도’를 분리하여 소개하는 이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분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저널리즘윤리규칙의 특징을 자세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징계조치를 제외한 언론사들의 정보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 사례 소개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1) 성범죄피해자 관련 보도

사례 1: 소녀에 대한 추가 모욕·파렴치한 페이스북 동영상에 관한 타블로이드 신문 보도 접수번호: 0219/15/2

“페이스북 고문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하로 발행된 기사와 관련한 불만처리사례이다. 페이스북에 공유된 한 비디오클립과 관련한 사건을 보도한 온라인판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묘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녀가 거리에서 속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있다. 그녀의 화장은 번지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으며, 그녀는 울고 있다. 한 남성이 그녀를 촬영하면서 “왜 내 물건을 훔쳤나?”라고 묻는다. 그녀는 흐느끼며 “나는 창녀니까”라고 대답했다. 남성은 다시 그녀에게 “너의 이름은

9) Entscheidungen Finden(<https://www.presserat.de/entscheidungen-finden.html>)참조

무엇이고, 어디 출신이야?”라고 묻는다. 그 젊은 여성은 자신의 이름과 출신 지역을 말한다.』

기사에는 비디오클립에 대한 묘사와 함께, 이 동영상을 촬영한 남성이 최대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형법 전문 변호사의 해석과 이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용자들을 비판하는 페이스북의 댓글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브리핑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소녀의 사진과 역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가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도 함께 기사를 통해 제공되었다.

이 보도와 관련하여 두 명의 독자가 저널리즘윤리규칙의 ① 진실성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⑪ 선정정보도/청소년보호 중 부적절정보도에 해당한다며 불만처리위원회에 평결을 요청하였다. 접수자들의 의견은 피해 여성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그녀가 무방비 상태로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부적절한 보도라는 것이었다. 이 불만에 대해 해당 신문사의 법무팀은 기사의 목적이 젊은 여성을 모욕하거나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법무팀은 편집팀이 페이스북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허용 가능한 방식으로 보도했고, 수사 당국에 취재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독자들의 의견을 받아 저널리즘윤리규칙 ①과 ⑪을 위반했다고 평결했다. 불만처리위원회의 평결에 따르면, 이 보도는 부적절하게 선정적이며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묘사 역시 공익을 훨씬 뛰어 넘는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중들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접했기에 피해 여성을 인식하긴 어렵지만, 피해 여성 스스로는 자신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제공한 기사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굴욕이 다시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보도에 공익적 목적은 충분하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불만처리위원회의 의견이다. 이 사례는 최종적으로 견책 평결을 받았다.

사례 2: 사건 피해자가 추가적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용의자의 인종 명시 접수번호 1038/16/1

접수된 사례는 “Maria L은 술에 취한 채 성폭행을 당했다” 제하의 기사와 “대학파티 후 Maria는 살해자를 만났다” 제하의 기사 등 두 건에 대한 것으로 불만접수는 세 건이었다. 프라이부르크 여학생 성폭행 살해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 내용은 경찰에 체포된 아프가니스탄 출신 17세 난민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채로 보도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 불만처리 신고자는 살해당한 피해자의 사진 공개는 성폭행과 살인을 보도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신문이 인물 사진과 함께 사고 발생 직전에 피해자가 촬영한 3장의 사진을 함께 제공한 것도 사후(死後)에도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른 신고자는 첫 번째 보도 이후의 후속 보도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내용을 접수했지만, 관련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세 번째 접수자는 용의자의 난민 지위와 출신 국가는 범죄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이 언급을 통해 난민 전체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사 측은 첫 번째 보도가 있는 지 약 5시간 후에 피해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온라인 상에서 공유되는 자료까지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인종과 소속을 밝히는 것이 범죄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왜 이를 밝히는 것이 비윤리적인지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즉, 독자들이 이 기사를 읽고 난 후에 모든 아프가니스탄 출신 사람들이 성폭행범이나 살인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신문사 측의 입장이었다.

불만처리위원회 측은 이 사안을 ⑧ 개인 인격권 보호 위반으로 보고 공개징계를 결정하였다. 먼저, 피해자의 신원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 위해선 가족/친척/기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등의 동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진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가해자의 정보를 공개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널리즘윤리규칙 ⑫ 차별의 내용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저널리즘윤리규칙 ⑫-(1)은 범죄행위 보도에서 용의자 또는 가해자의 소속(종교, 민족, 국가 등)의 공개는 보도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 이 사건의 가해자가 독일에 입국하기 전인 2013년, 그리스의 코르푸 섬에서 한 여성을 공격하고 절벽으로 떨어트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처리위원회는 그의 과거 전력과 소속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최종적으로 이 사례는 피해자의 개인 인격권 보호를 위반한 공개징계로 결정되었다.

사례 3: 나체로 여성에게 길을 거닐도록 강요하다-남자친구는 자신의 범죄를 인터넷에 기록하다

접수번호: 0012/18/1

한 타블로이드 신문의 온라인기사는 “비인륜적 리벤지 비디오로 7년 수감”이라는 제목으로 뉴욕에서 발생한 여성혐오주의자의 사건을 보도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학대하고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불상으로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 나체의 그녀를 실외로 내쫓은 사건이었다. 신문은 범죄자인 남성이 촬영한 비디오를 인용, 나체 여성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제공했다. 이 기사를 접한 독자가 이 기사 내용이 피해자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저널리즘윤리규칙의 ① 진실성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⑧ 개인 인격권 보호 중 명예 보호 등 두 가지 원칙을 위배했다며 독일언론위원회에 불만을 접수하게 된다.

불만처리위원회는 편집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고, 새로운 삶을 위해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이사하고 성형수술을 받는 등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 여성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비디오 파일에서 갈무리로 제공한 사진은 기사를 통해 공익과 정보를 얻고자 하는 독자들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리벤지비디오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불법적인 영상 사용이 허용된다고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편집자 측은 사진에서 피해 여성의 모습을 가늠할 수 없고, 이미 거주지와 외모를 바꾸었기 때문에 보도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불만처리위원회 측은 그 자체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끔직한 결론이었다고 비판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사진 게시에서 저널리즘윤리규칙 ①과 ⑧의 위배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진 속 피해 여성은 타인이 알아보긴 어려울 순 있지만, 반복되는 보도로 인해 또 다시 수치심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 근거였다. 공익과 무관한 이 보도에 대해 독일언론위원회 측은 공개질책으로 징계를 최종결정했다.

사례 4: 여러 기사에 걸쳐 제공된 사생활- 개인의 정보결정권 보호

접수번호: 0068/18/4

이 사례는 아내를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남성이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

의 재판 과정과 관련하여, 지역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이 저널리즘윤리규칙 ② 신중과 ⑧ 개인 인격권 보호를 위반한다고 접수된 내용이다. 재판에 관한 첫 번째 보도는 남성은 자살한 것이 아니며, 성폭행 피해자인 여성이 그를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에선 범죄자와 피해자 간 발생한 성적인 접촉 빈도와 유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법원에서 제공한 자료 외에 그들의 과거 행실에 대한 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보도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오히려 50~100회 성폭행을 당했다고 법원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 여성 측은 보도내용이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보도내용이 원고와 피고의 사생활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거짓 사실과 소문을 확산시켜 원고와 원고의 지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불만이 접수된 후, 불만처리위원회는 평결을 위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게 자료나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그 어떤 의견이나 반론을 받지 못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 언론보도들이 저널리즘윤리규칙 ⑧ 개인 인격권 보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징계를 내렸다. 그 배경에는 기사를 통해 제공된 정보가 자세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범죄 피해자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음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또한, 불만처리위원회 측은 원고와 피고가 공인이 아니라는 점, 그들의 사건이 공공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대중의 관심이 사건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 등을 들어 이 사안이 ⑧ 개인 인격권 보호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법원심리과정에서 주장되었던 내용들을 검토하지 않고 여성이 남성을 살해했다고 보도한 것은 언론윤리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② 신중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징계로 최종 결정되었다.

사례 5: 거실 사진 공개-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생활권 침해
접수번호: 0539/18/2

접수된 사례는 두 아이 앞에서 지인을 성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 성추행범의 거실 사진을 온라인신문이 게재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저널리즘윤리규칙의 ⑧ 개인 인격권 보호 위반이 쟁점이었다. 기사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거실의 모습을 촬

영한 사진과 함께 게재되었는데, 한 독자가 거실 사진공개가 피해자의 개인 인격권을 훼손했음을 주장하며 독일언론위원회에 불만을 접수하게 된다. 신문 편집자 측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범죄자의 집이 1층에 위치하고 있어,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통행인이 내부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불만처리위원회 측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더라도 거주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적인 조사방식이라는 점에서 신문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신문사 측은 두 아이의 앞에서 한 젊은 여성을 성폭행한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익적 가치를 가진 범죄 현장이라고 해석했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불만처리위원회 측에선 저널리즘윤리규칙 ⑧-(8)인 거주지 보호를 위배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사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게재하여 성폭행 피해자가 심각한 부담을 받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이 사례는 최종적으로 공개징계로 결정되었다.

사례 6: 영국 출신 여성이 마조레호 호수 호텔에서 사망한 사건 **접수번호: 0331/19/2**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이 마주하고 있는 마조레호(Maggiore) 호수에서 22세의 영국인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타블로이드지의 온라인 판에서 “독일 친구의 주장: 섹스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하의 기사로 소개하였다. 이 신문에서 한 독일인이 호텔 방에서 영국인 여자 친구와 거친 성관계를 맺는 도중에 살해했다고 시인했지만, 호텔 직원은 폭력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편집자들은 이 보도를 위해 스위스 신문을 인용하였고, 피해자가 비키니를 입은 사진과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 등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 기사를 읽은 한 독자는 이 보도가 저널리즘윤리규칙 ⑧ 개인 인격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불만을 접수했다. 접수된 내용에는 신문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진이 모자이크처리되지 않은 채로 보도하였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경시하는 “섹스 중에 발생한 사건”, “야생적인 게임에서 길을 잃다” 등의 단어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접수된 불만에 대해 신문편집장은 남자친구는 호텔방에서 성행위를 하던 중, 그의 여자 친구를 우연히 살해하게 되었다고 시인한 것을 다뤘기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편집진이 찾아낸 사실이 아니라, 수사당국이 편집진에게 통보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주 의견이었다. 또한, 여성을 실명으로 언급한 것은 외국의 보도에서 실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 외에도 불만접수자가 비판한 사진은 공개된 출처에서 가져온 것으로, 피해자 여성은 타이트한 옷을 입고 매혹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사진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그녀는 자신을 ‘섹시한 부유층 소녀’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저널리즘윤리규칙 ⑧과 ⑧-(2)의 인격 보호 및 피해자 보호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평가했다.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는 폭력범죄 피해자를 식별 가능하게 표시한 사실에 대한 것이었다. 피해여성은 공인이 아니며, 그 사진을 공개한다고 해서 얻는 공익적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 불만처리위원회의 해석이다. 또한, 친척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데 동의했다. 이 사건은 당시 독일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사례지만, 피해자의 신원을 아는 것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아니며, 다른 국가에서 허용한다고 해서 독일의 저널리즘윤리를 위배해도 된다는 것은 아님을 지적했다. 이 사안은 최종적으로 견책처리되었다.

사례 7: 학대 피해자 정보 및 피의자 신원정보 공개 가능 여부
접수번호: 0059/20/2

이 사례는 “보호자가 아이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 제하의 기사가 범죄자와 피해자의 개인 인격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심의 내용이다. 한 지역 개신교 교회 소속 보이스카우트 보호자인 42세 Christian. L이 8~14세의 어린이 4명을 성폭행하고 학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사건에 대해 지역신문이 재판 과정을 보도하게 된다. 총 330건의 아동학대 혐의로 범죄자가 구금된 이 사건에 대해 지역신문은 “Tom K.(가명)는 3년 동안 학대가 지속되어 보이스카우트를 탈퇴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부모는 다시 그 단체로 보냈으며, Robin F.(가명)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씩 학대와 성폭행을 당했다. Robin F.는 항문성교로 인해 고통을 겪었지만, 그의 엄마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기사가 발행된 후, 한 익명의 신고자가 불만처리위원회에 지역 거주민이 8,000명 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편집자들이 그 행위를 자세히 설명하여 피해아동/청소년들을 다시 희생자로 만들었다며 불만을 접수했다.

접수된 사안에 대해 편집진들은 피해자 보호,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원칙을 어김으로써,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쳤음에 대해서 인정 및 사과하고 기사를 수정하였다. 또한, 비록 가명이지만 피해아동들에게 이름을 부여한 것도 실수였음을 인정, 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삭제하였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 저널리즘윤리규칙 ⑧-(2)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위반으로 처리했다. 피해자들이 공인이 아니고,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공개적으로 이를 공표함으로써 2차 피해가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불만처리위원회와 신문사 측의 의견이 동일했고, 신문사 측이 즉각적으로 정보 삭제 및 수정을 행했기 때문에 이 사례는 견책으로 처리되었다.

(2) 성범죄 피의자 관련 보도

사례 1: ‘난민’ 언급은 허용되지 않음-크리스마스에 자신을 초대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사건 보도

접수번호: 1200/15/1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 “집에서 성범죄를 당한 여성” 제하로 보도된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사에 대한 불만처리사례로 불만처리위원회는 이 기사를 저널리즘윤리규칙 ⑫의 차별기준 위반 여부를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이 난민보호소에 거주하는 지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후, 남성이 여성에게 화가 났고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기술되어 있다. 독자는 피의자가 ‘난민보호소’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편집자와 기사는 피의자의 국적과 민족적 출신을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난민’이라는 사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표시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그들은 ‘난민보호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널리즘윤리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불만처리위원회의 평결 결과, ‘난민보호소’에 대한 정보는 독자에게 사건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석했다. 이 기사에서 중요한 내용은 “크리스마스에 한 남성을 집에 초대한 여성이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그 남성이 난민보호소에 거주하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기사 전체 내용을 감안할 때, 남성이 ‘성폭행 의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저널리즘윤리규칙 ⑬ 무죄추정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이 사례는 최종으로 주의 판결을 받았다.

사례 2: 성폭행사건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특정 가능한 정보 제공- 시리아 난민이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의 용의자라고 주장한 기사
접수번호: 0961/18/2

‘프라이부르크 집단성폭행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대한 불만접수 사례다. “최대 15명의 가해자가 18세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시리아 출신 Majd. H.가 프라이부르크의 한 클럽 앞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Majd. H.는 첫 번째 성폭행 이후 친구들을 데리고 왔으며 최소 7명이 4시간 동안 그 여성을 유린했는데, 그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수색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기사에선 현장 사진과 Majd. H.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들을 함께 제공하면서, 그의 얼굴에 동그라미를 그려 인식 가능하도록 했다. 사건 발생 2년 전에 촬영한 사진 중 Majd. H.가 기관총을 들고 있는 사진도 게재했는데, 그 사진의 설명엔 “나는 쿠르드이고, 나의 마음은 철과 같다. 나는 카미실리 출신이다”라는 표제와 함께 “이 사진은 아이의 모습을 잃은 남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설명을 첨부했다.

해당 기사를 읽은 한 독자는 기사의 내용이 저널리즘윤리규칙 ⑧ 개인 인격권 보호를 위배했다고 신고했다. 독자 신고는 사진캡션에서 용의자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언급된 것으로도 모자라 직접 링크까지 제공하였고, 개인 사진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신문편집장은 대중이 언론으로부터 포괄적인 정보를 받는 데 관심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신문사 측은 용의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언급하지 않았고, 피의자의 실명을 기사에 담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이의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사의 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불만처리위원회 측은 해당 기사가 저널리즘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평가했고, 이에 신문사 측은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을 촉발시킨 범죄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기사 내용을 옹호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범죄보도 내용 필요성에 관해 신문사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가해자로 의심되는 용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은 기사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용의자의 특정한 사진들을

인용하였기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인식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신문사의 보도가 있었을 당시 법적 절차는 초기 단계였고, 용의자가 공인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단성폭행은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이 매우 심각한 형사범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만처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최종심의결과는 견책이다.

사례 3: 성폭행범의 출신 국가 언급

접수번호: 0631/19/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한 지역신문은 “의심받는 청소년들” 제하로 한 도시에서 발생한 성폭행사건을 보도했다. 12~14세의 청소년 5명이 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을 다룬 이 기사엔 용의자들이 모두 불가리아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다른 도시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불가리아 출신 용의자/범죄자들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들을 함께 다루었다.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해 한 독자는 소수 민족의 청소년들을 특정화함으로써, 저널리즘 보도규칙 ⑫ 차별과 ⑫-(1) 용의자의 소속 보도 금지 조항을 위배한 사례라고 불만처리위원회에 평결을 요청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해 신문편집장은 불만처리위원회 측에 용의자의 소속을 밝히는 것이 특별한 공익성을 추구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신문 측은 이 사건은 수사당국이 ‘심각한 성범죄’로 평가했고,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고 판단했음을 강조했다. 불만처리위원회의 평의 결과, 국적을 명명하는데 정당한 공익이 존재하며, 피의자들이 속해있는 종교, 인종, 사회적 소속보다 더 큰 개념인 국적을 명시한 것이 공통된 사건을 검토한 결과라는 점을 들어 이 불만처리는 기각되었다.

사례 4: 용의자를 인식가능하게 표현- 무죄추정원칙 위반

접수번호: 0091/19/2

이 사례는 온라인 타블로드이드 지의 “캠핑지에서 온 아동성추행범” 제하의 보도에 관한 불만접수내용이다. 입양한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한 남성에게 대해 보도한 이 기사는 그 남성을 Andreas V.로 명명했다. 기사에 사용된 사진은 용의자의 눈

에 검은색으로 막대처리(Augenbalken)함으로써 정확한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기사를 읽은 독자는 이 보도가 용의자를 가해자로 묘사했다며, 저널리즘윤리규칙 ⑧ 개인 인격권 보호와 ⑬ 무죄추정 등 두 가지를 위배했다고 불만처리위원회에 의견을 접수했다. 접수된 내용엔 Andreas V.가 제목으로 이미 아동 성추행범으로 지명되었고, 기사를 다 읽은 후에야 그가 가해자가 아닌 용의자라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대한 평가는 본문 내용 뿐만 아니라 제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불만처리위원회 측의 확인 결과, 보도가 있었던 시기에 검찰이 수집한 증거는 Andreas V.가 범죄자로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의 편집팀은 모든 저널리즘보도규칙을 무시하고 가해자를 익명과 막대처리한 이미지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만처리위원회는 이 보도가 불만접수인의 지적처럼 저널리즘윤리규칙 ⑧과 ⑬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도가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목 또한 용의자의 유죄가 입증되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최종적으로 이 기사는 견책 처리되었다.

IV. 맺으며

본고는 독일의 성폭행 피해자 등을 보도하는 데 있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자율규제기관과 사법기관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 독일의 범죄사건 보도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및 소송에 많이 인용되는 인격권의 개념과 인쇄매체/온라인매체를 통해 제공된 정보의 불만처리기관인 독일언론위원회 저널리즘윤리규칙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성범죄자 피해자 등과 관련한 보도를 위한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범죄자 및 피해자 보도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검토했고, 사례는 성범죄 관련 사안으로 제한했다. 본문을 통해 검토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법을 통해 보호되는 인격권 중 일반적 인격권은 민법과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가치로서, 민법의 제823조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기본법에 의해 보장되는 언론 자유이지만 기본법에 따라 그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일반적 인격권이다. 일반적 인격권은 개인의 활동 범주에 따라

사생활 영역, 개인 영역, 사회/공공 영역 등으로 구분되고, 그 영역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 영역 관련 정보는 최대한으로 개인에게 보장되며, 반대로 사회/공공 영역은 보장범위가 가장 적다. 언론보도에 있어서 이 기준은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무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대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활동 범주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영역에서 강력하게 보호를 받는다.

둘째, 정부가 언론감시기구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던 것에 반발하여 설립된 독일언론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저널리즘윤리규칙을 제정, 인쇄신문/온라인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 및 규제하고 있다. 자율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산업을 구성하는 독일의 특성에 따라 내부지침과 규제는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 독일언론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언론사의 비율이 약 9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저널리즘윤리규칙은 거의 모든 신문사의 편집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1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일언론위원회의 저널리즘윤리규칙 위반 여부는 독자가 신고한 사례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검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널리즘윤리규칙 중에서 사건보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① 진실성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 ⑧ 인격권 보호 ⑨ 명예보호 ⑪ 선정 보도, 청소년보호 ⑫ 차별 ⑬ 무죄추정 등 여섯 가지이며, 이는 성범죄 피의자/피해자보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적 인격권과 저널리즘윤리규칙 등 두 가지 언론보도 관련 쟁점 판단기준은 피의자에게 사건에 대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여론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로 활용되는 반면, 피해자의 정보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관심을 위한 보도로 분류되어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 인격권과 저널리즘윤리규칙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겪었거나 불만처리위원회의 평결을 받은 사례 중 성범죄 피해자나 피의자 관련 사례를 추출하여 그 사례와 판결/평결 근거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연방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성범죄자 및 성범죄 피해자 관련 판례 중 피해자의 표현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이 피의자 또는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일반적 인격권보다 더 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과 같이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사실이 '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활동에 대해 피의자가 제약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사

례 2)처럼 성범죄가 발생하는 과정이나 사건 발생에 대한 내용들은 일반적 인격권에서 규정하는 사생활 및 개인 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적’ 상황이라고 판결한 것이 그 예다. 하지만 피의자로 언급되고 묘사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이를 묘사하는 경우엔 일반적 인격권과 명예훼손 등이 적용된다는 점도 발견되었다(〈사례 3〉).

둘째, 독일언론위원회에 접수된 언론기사 불만사례 중 성범죄와 관련한 사례들을 성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례와 성범죄 피의자에 관한 내용 두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검토한 사례 중 〈사례 1〉의 평결결과에 따르면, ‘난민 출신’이라는 피의자의 상황이 성폭행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저널리즘윤리규칙의 ⑫ 차별을 위배했다고 해석했고, 〈사례 2〉에선 성폭행 사건과 관련성이 약한 피의자의 과거 사진을 불필요하게 제공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다뤘다는 점에서 ⑧ 개인 인격권보호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유사하게 〈사례 4〉에선 비록 가명 처리를 했지만 용의자를 실제 범인인 것으로 기사에서 묘사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저널리즘윤리규칙의 ⑧ 개인인격권보호 ⑬ 무죄추정 등을 위배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상의 평결결과를 감안할 때, 언론보도에서 다뤄진 정보가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진실성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성폭행보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사례 3〉은 예외적으로 한 도시에서 발생한 성폭행사건 용의자들의 국적 표기가 허용된 사례다.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수사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기에 국적 표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신문사 측과 불만처리위원회의 입장이다. 피의자의 보도의 경우, 검증이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이 원칙으로 적용되나,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건인 경우에 범죄자의 신원 공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문에서 인용한 독일언론위원회의 불만처리사례 중 성범죄 피해자에 관한 보도 내용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폭 넓게 보호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사례 1〉과 〈사례 3〉은 유사하게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을 온라인으로 공유한 사건을 보도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루는데, 두 사안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① 진실성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 ⑧ 개인 인격권 보호, ⑪ 선정보도/청소년보호 등을 위배했다고 평가받았다. 보도에서 사용된 사진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고 학대의 장

면을 담고 있는 동영상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더라도 피해자는 스스로 기억에 남기에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징계의 근거다. <사례 2>는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당한 한 여성의 사진을 보도한 것에 대한 징계로, 저널리즘윤리규칙 ⑧ 개인 인격권 보호에 따라 사후에도 보장되는 개인 명예를 훼손한 사례로 분류되었다. 한편, <사례 2>는 피의자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윤리규칙 ⑫-1)을 위반했다고 불만이 접수되었지만, 피의자가 과거 타국에서 저질렀던 유사사건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정보였다고 판결, 피의자 관련 평결의 <사례 3>과 유사하게 위반사항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사례 4>와 <사례 6>은 일반적 인격권 중 가장 보호가 강한 사생활영역에 해당하는 성행위에 대한 묘사/정보제공을 위반한 사례로, 저널리즘윤리규칙의 ⑧ 개인 인격권 보호 및 ② 신중 위반으로 징계가 결정된 유형이다. <사례 5>와 <사례 7>은 범죄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을 보도할 때 그들의 상황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을 위배하여 사건 발생 장소 공개, 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이 문제시되어 징계를 받게 된 사례로 정리된다.

본문을 통해 소개한 사례들은 개별적으로 복잡한 이익관계 및 사건 내막을 담고 있기에, 하나의 사안에만 맞춰 위반 사항 또는 징계를 논의하기 어렵다. 어떤 사례에선 허용되는 정보수준이 다른 사례에선 금지되고, 사진 인용이나 피의자/용의자를 특정가능하게 하는 정보공개 역시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무리 피의자라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피해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는 최소한으로만 허용한다는 지침이 성폭행 관련 보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격권의 개념, 저널리즘보도규칙 및 판례와 평결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독일의 성범죄 보도에서 피의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충분한 자정능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 bpb (2015). Persönlichkeitsrecht. Retrieved from <https://www.bpb.de/nachschlagen/lexika/recht-a-z/22671/persoenlichkeitsrecht>
- bpb (2017a). Ehrschutz / Lebensbild / Recht auf Privatheit. Retrieved from <https://www.bpb.de/gesellschaft/digitales/persoenlichkeitsrechte/244836/ehrschutz-lebensbild-recht-auf-privatheit>
- bpb (2017b). Das Sphärenmodell zur Bemessung von Persönlichkeitsrechtsverletzungen. Retrieved from <https://www.bpb.de/gesellschaft/digitales/persoenlichkeitsrechte/244835/sphaerenmodell>
- Bürgerliches Gesetzbuch (민법. 2020년 개정). Retrieved from <https://www.gesetze-im-internet.de/bgb/BJNR001950896.html>
- Deutscher Presserat (2017). Praxis-Leitsät ze Richtlinie 12.1 des Pressekodex. Retrieved from https://www.presserat.de/files/presserat/dokumente/pressekodex/Pressekodex_Leitsaetze_RL12.1.pdf
- Deutscher Presserat. Presskodex: Ethische Standards für den Journalismus. Retrieved from <https://www.presserat.de/pressekodex.html>
- Frank Fechner (2019). Medienrecht. 20. Auflage. utb: Stuttgart.
- Grundgesetz (기본법. 2019년 개정). Retrieved from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BJNR000010949.html>

판례

- Bundesverfassungsgericht. *BvR 1107/09*. Retrieved from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k20090610_1bvr110709.html
- Bundesverfassungsgericht. *BvR 131/96*. Retrieved from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1998/03/rs19980324_1bvr013196.html
- Kostenlose Urteile (2009.10.06). *BVerfG: Individualisierende Medienberichterstattung auch bei Sexualstraftaten verfassungsgemäß*. Retrieved from https://www.kostenlose-urteile.de/BVerfG_1-BvR-110709_BVerfG-Individualisierende-Medienberichterstattung-auch-bei-Sexualstraftaten-verfassungsgemaess.news8159.htm?sk=dd7d12018f03773f0d9466e773ddc2bf

Telemedicus (2009). *LG Hamburg: "Sexschwein"*. Retrieved from <https://www.telemedicus.info/urteile/Allgemeines-Persoenlichkeitsrecht/Recht-am-eigenen-Bild/1090-LG-Hamburg-Az-324-O-73309-Sexschwein.html>

Telemedicus. BVerfG: Nennung des eigenen Namens bei Missbrauchsbezeichnung (BvR 131/96). Retrieved from <https://www.telemedicus.info/urteile/Allgemeines-Persoenlichkeitsrecht/262-BVerfG-Az-1-BvR-13196-Nennung-des-eigenen-Namens-bei-Missbrauchsbezeichnung.html>

신문자료

FAZ (2017.03.22). Was die Presse zu Straftätern schreibt. Retrieved from <https://www.faz.net/aktuell/feuilleton/medien/presserat-erneuert-richtlinie-zur-berichterstattung-ueber-straftate-14937809.html>

M (2016.07.06.). "Sächsische Zeitung" will Richtlinie 12.1 des Presserats ignorieren. Retrieved from <https://mmm.verdi.de/beruf/saechsische-zeitung-will-richtlinie-12-1-des-presserats-ignorieren-32525>

MEEDIA (2016.07.05). Herkunft von Straftätern: Sächsische Zeitung hält sich nicht mehr an Pressekodex und erntet Kritik. Retrieved from <https://meedia.de/2016/07/05/herkunft-von-straftaetern-saechsische-zeitung-haelt-sich-nicht-mehr-an-pressekodex-und-erntet-kritik/>